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1212 예산공통운영	31,076,166	28,573,636	2,502,530	
100 경상예산	29,873,666	27,572,236	2,301,430	
110 인건비	27,178,541	25,000,778	2,177,763	
101 인건비	27,178,541	25,000,778	2,177,763	
	15,292,724	13,986,509	1,306,215	01 기본급
				○ 본청, 사업소, 읍면급여 = 13,894,047
				○ 일반직 = 11,736,433
				- 연봉제 정무직 5,640,000 X 1인 X 12월 = 67,680
				- 4급(28호봉) 3,128,300 X 2인 X 12월 = 75,080
				- 5급(28호봉) 2,822,500 X 31인 X 12월 = 1,049,970
				- 6급(22호봉) 2,284,600 X147인 X 12월 = 4,030,035
				- 7급(18호봉) 1,924,300 X157인 X 12월 = 3,625,382
				- 8급(10호봉) 1,390,600 X118인 X 12월 = 1,969,090
				- 9급(5호봉) 994,800 X 77인 X 12월 = 919,196
				○ 기능직 = 1,161,731
				- 6등급(22호봉) 2,284,600 X 2인 X 12월 = 54,831
				- 7등급(18호봉) 1,924,300 X 6인 X 12월 = 138,550
				- 8등급(12호봉) 1,486,000 X 13인 X 12월 = 231,816
				- 9등급(8호봉) 1,151,900 X 22인 X 12월 = 304,102
				- 10등급(5호봉) 900,900 X 40인 X 12월 = 432,432

과	목	예산액	전년도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도직 = 880,105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도관(28호봉) 3,530,400 X 3인 X 12월 = 127,095 - 지도사(25호봉) 2,241,100 X 28인 X 12월 = 753,010 ○ 계약직 = 34,68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등급 2,890,000 X 1인 X 12월 = 34,680 ○ 연구사(23호봉) 2,252,700 X 3인 X 12월 = 81,098 ○ 처우개선비 13,894,128,000 X 1.6% = 222,307 ○ 상여금 = 1,176,37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근수당 14,116,434,000 X 2/12 X 50% = 1,176,370
		2,849,351	2,813,043	36,308	02 수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정 액 수 당] ○ 가족수당 = 381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우자 30,000 X 579인 X 12월 = 208,440 ○ 부양가족 20,000 X 719인 X 12월 = 172,560 ○ 자녀학비보조수당 = 107,859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학교(1급지 시지역) 47,700 X 50인 X 4회 = 9,540 ○ 중학교(2급지 읍면지역) 47,300 X 75인 X 4회 = 14,190 ○ 고등학교(특급지) 409,200 X 10인 X 4회 = 16,368 ○ 고등학교(가등급 1급지 시지역) 385,600 X 25인 X 4회 = 38,560 ○ 고등학교(가등급 2급지 읍면) 317,400 X 23인 X 4회 = 29,201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○ 장기근속수당 = 364,080
						○ 25년이상 130,000 X 60인 X 12월 = 93,600
						○ 20년이상~25년미만 110,000 X 68인 X 12월 = 89,760
						○ 15년이상~20년미만 80,000 X 88인 X 12월 = 84,480
						○ 10년이상~15년미만 60,000 X 92인 X 12월 = 66,240
						○ 5년이상~10년미만 50,000 X 50인 X 12월 = 30,000
						○ 위험수당 = 43,200
						○ 갑종 40,000 X 60인 X 12월 = 28,800
						○ 을종 30,000 X 40인 X 12월 = 14,400
						○ 관리업무수당(4급이상 봉급액의 9%) 3,128,300 X 8인 X 9% X 12월 = 27,029
						○ 대우공무원수당(월봉급액의 4.8%월액) = 145,372
						○ 4급대우 2,822,500 X 8인 X 4.8% X 12월 = 13,007
						○ 5급대우 2,375,800 X 30인 X 4.8% X 12월 = 41,054
						○ 6급대우 1,924,300 X 34인 X 4.8% X 12월 = 37,686
						○ 7급대우 1,390,600 X 22인 X 4.8% X 12월 = 17,622
						○ 지도관대우 2,022,000 X 14인 X 4.8% X 12월 = 16,306
						○ 기능6급대우 1,924,300 X 8인 X 4.8% X 12월 = 8,868
						○ 기능7급대우 1,486,000 X 8인 X 4.8% X 12월 = 6,848
						○ 기능8급대우 1,151,900 X 6인 X 4.8% X 12월 = 3,981
						○ 특수업무수당 = 420,336
						○ 기술업무수당 = 94,680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- 5급 50,000 X 9인 X 12월 = 5,400
						- 6~7급 30,000 X 162인 X 12월 = 58,320
						- 8급이하 20,000 X 50인 X 12월 = 12,000
						- 지도관 60,000 X 3인 X 12월 = 2,160
						- 지도사 50,000 X 28인 X 12월 = 16,800
						○ 가산금 = 32,640
						- 기술사 50,000 X 2인 X 12월 = 1,200
						- 기사1급 30,000 X 36인 X 12월 = 12,960
						- 기사2급 20,000 X 77인 X 12월 = 18,480
						○ 자동차운전업무수당 40,000 X 17인 X 12월 = 8,160
						○ 민원업무수당 30,000 X 102인 X 12월 = 36,720
						○ 전산업무수당 = 3,240
						- 3년이상 50,000 X 3인 X 12월 = 1,800
						- 1~3년미만 30,000 X 4인 X 12월 = 1,440
						○ 의사수당 = 7,440
						- 5급 80,000 X 2인 X 12월 = 1,920
						- 6급 60,000 X 1인 X 12월 = 720
						- 7급이하 50,000 X 8인 X 12월 = 4,800
						○ 장려수당 = 20,496
						- 통신시설업무 = 936
						· 6급 40,000 X 1인 X 12월 = 480
						· 7급 38,000 X 1인 X 12월 = 456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- 쓰레기시설업무(7급) 40,000 X 1인 X 12월 = 480
						- 오폐수처리장 120,000 X 7인 X 12월 = 10,080
						- 위생처리장 150,000 X 5인 X 12월 = 9,000
						○ 연구수당 80,000 X 1인 X 12월 = 960
						○ 읍면근무수당 70,000 X 230인 X 12월 = 193,200
						○ 전기위험물관리수당 = 960
						- 관리담당 40,000 X 2인 X 12월 = 960
						○ 사서수당(6급이상) 20,000 X 4인 X 12월 = 960
						○ 모범공무원수당 50,000 X 5인 X 12월 = 3,000
						○ 사회복지업무수당 30,000 X 45인 X 12월 = 16,200
						○ 의료업무 등 수당(수의직렬수의사면허증소지자) 70,000 X 2인 X 12월 = 1,680
						○ 시간외근무수당(정액, 추가분) = 1,360,475
						○ 일반직 = 1,144,622
						- 5급 9,471 X 31인 X 25시간 X 12월 = 88,081
						- 6급 8,036 X 147인 X 25시간 X 12월 = 354,388
						- 7급 7,210 X 157인 X 25시간 X 12월 = 339,591
						- 8급 6,461 X 118인 X 25시간 X 12월 = 228,720
						- 9급 5,794 X 77인 X 25시간 X 12월 = 133,842
						○ 기능직 = 144,143
						- 6등급 8,036 X 2인 X 25시간 X 12월 = 4,822
						- 7등급 7,210 X 6인 X 25시간 X 12월 = 12,978
						- 8등급 6,461 X 13인 X 25시간 X 12월 = 25,198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- 9등급 5,794 X 22인 X 25시간 X 12월 = 38,241
				- 10등급 5,242 X 40인 X 25시간 X 12월 = 62,904
				○ 지도직 = 71,710
				- 지도관 9,285 X 3인 X 25시간 X 12월 = 8,357
				- 지도사 7,542 X 28인 X 25시간 X 12월 = 63,353
	1,060,800	939,120	121,680	03 정액급식비
				○ 정액급식비 130,000 X 680인 X 12월 = 1,060,800
	1,005,600	693,240	312,360	04 교통보조비
				○ 교통보조비(연봉제, 계약직제외) = 1,005,600
				○ 일반직 = 771,960
				- 4,5급 140,000 X 33인 X 12월 = 55,440
				- 6,7급 130,000 X 283인 X 12월 = 441,480
				- 8,9급 120,000 X 191인 X 12월 = 275,040
				○ 기능직 = 158,640
				- 6,7급 130,000 X 14인 X 12월 = 21,840
				- 8,9,10급 120,000 X 95인 X 12월 = 136,800
				○ 지도직 = 48,720
				- 지도관 140,000 X 3인 X 12월 = 5,040
				- 지도사 130,000 X 28인 X 12월 = 43,680
				○ 연구사 130,000 X 3인 X 12월 = 4,680
				○ 청원경찰 120,000 X 15인 X 12월 = 21,600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 기초
		1,501,383	1,341,309	160,074	05 명절휴가비
					○ 명절휴가비(연봉,계약직 제외) = 1,501,383
					○ 일반직 = 1,219,466
					- 4급(28호봉) 3,128,300 X 2인 X 60% X 2회 = 7,508
					- 5급(25호봉) 2,748,500 X 33인 X 60% X 2회 = 108,841
					- 6급(24호봉) 2,346,900 X170인 X 60% X 2회 = 478,768
					- 7급(17호봉) 1,885,000 X157인 X 60% X 2회 = 355,134
					- 8급(8호봉) 1,286,800 X118인 X 60% X 2회 = 182,211
					- 9급(4호봉) 941,600 X 77인 X 60% X 2회 = 87,004
					○ 기능직 = 162,433
					- 6등급(28호봉) 2,450,500 X 2인 X 60% X 2회 = 5,882
					- 7등급(20호봉) 1,996,600 X 16인 X 60% X 2회 = 38,335
					- 8등급(15호봉) 1,614,500 X 23인 X 60% X 2회 = 44,561
					- 9등급(8호봉) 1,151,900 X 22인 X 60% X 2회 = 30,411
					- 10등급(5호봉) 900,900 X 40인 X 60% X 2회 = 43,244
					○ 지도직 = 74,272
					- 지도관(28호봉) 3,530,400 X 3인 X 60% X 2회 = 12,710
					- 지도사(16호봉) 1,832,200 X 28인 X 60% X 2회 = 61,562
					○ 계약직 = 4,500
					- 나등급 3,750,000 X 1인 X 60% X 2회 = 4,500
					○ 연구사(17호봉) 2,007,100 X 3인 X 60% X 2회 = 7,226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○ 청원경찰(본청,사업소) 1,860,300 X 15인 X 60% X 2회 = 33,486
		2,502,299	2,216,015	286,284	06 가계지원비
					○ 가계지원비
					○ 일반직 = 2,032,443
					○ 4급(28호봉) 3,128,300 X 2인 X 40% X 5회 = 12,514
					○ 5급(25호봉) 2,748,500 X 33인 X 40% X 5회 = 181,401
					○ 6급(24호봉) 2,346,900 X170인 X 40% X 5회 = 797,946
					○ 7급(17호봉) 1,885,000 X157인 X 40% X 5회 = 591,890
					○ 8급(8호봉) 1,286,800 X118인 X 40% X 5회 = 303,685
					○ 9급(4호봉) 941,600 X 77인 X 40% X 5회 = 145,007
					○ 기능직 = 270,717
					○ 6급(28호봉) 2,450,500 X 2인 X 40% X 5회 = 9,802
					○ 7급(20호봉) 1,996,600 X 16인 X 40% X 5회 = 63,892
					○ 8급(15호봉) 1,614,500 X 23인 X 40% X 5회 = 74,267
					○ 9급(8호봉) 1,151,900 X 22인 X 40% X 5회 = 50,684
					○ 10급(5호봉) 900,900 X 40인 X 40% X 5회 = 72,072
					○ 지도직 = 123,787
					○ 지도관(28호봉) 3,530,400 X 3인 X 40% X 5회 = 21,183
					○ 지도사(16호봉) 1,832,200 X 28인 X 40% X 5회 = 102,604
					○ 계약직 = 75,352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등급 3,750,000 X 1인 X 40% X 5회 = 7,500 ○ 연구사(17호봉) 2,007,100 X 3인 X 40% X 5회 = 12,043 ○ 청원경찰(본청,사업소) 1,860,300 X 15인 X 40% X 5회 = 55,809
	417,056	753,633	△336,577	07 연가보상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직 = 338,743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급(28호봉) 3,128,300 X 2인 X 1/30 X 10일 = 2,086 ○ 5급(25호봉) 2,748,500 X 33인 X 1/30 X 10일 = 30,234 ○ 6급(24호봉) 2,346,900 X 170인 X 1/30 X 10일 = 132,991 ○ 7급(17호봉) 1,885,000 X 157인 X 1/30 X 10일 = 98,649 ○ 8급(8호봉) 1,286,800 X 118인 X 1/30 X 10일 = 50,615 ○ 9급(4호봉) 941,600 X 77인 X 1/30 X 10일 = 24,168 ○ 기능직 = 45,121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6급(28호봉) 2,450,500 X 2인 X 1/30 X 10일 = 1,634 ○ 7급(20호봉) 1,996,600 X 16인 X 1/30 X 10일 = 10,649 ○ 8급(15호봉) 1,614,500 X 23인 X 1/30 X 10일 = 12,378 ○ 9급(8호봉) 1,151,900 X 22인 X 1/30 X 10일 = 8,448 ○ 10급(5호봉) 900,900 X 40인 X 1/30 X 10일 = 12,012 ○ 지도직 = 20,632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도관(28호봉) 3,530,400 X 3인 X 1/30 X 10일 = 3,531 ○ 지도사(16호봉) 1,832,200 X 28인 X 1/30 X 10일 = 17,101 ○ 계약직 = 1,25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나등급 3,750,000 X 1인 X 1/30 X 10일 = 1,250 ○ 연구사(17호봉) 2,007,100 X 3인 X 1/30 X 10일 = 2,008 ○ 청원경찰(본청, 사업소) 1,860,300 X 15인 X 1/30 X 10일 = 9,302
	333,808	299,569	34,239	08 기타직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청, 사업소, 읍면, 청원경찰 = 333,808 ○ 급여(13호봉) 1,449,100 X 15인 X 12월 = 260,838 ○ 처우개선비 260,838,000 X 1.6% = 4,174 ○ 상여금 = 13,042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근수당 1,449,100 X 15인 X 30% X 2회 = 13,042 ○ 시간외근무수당(정액,초과분) 6,132 X 15인X21시간X12월 = 23,179 ○ 가족수당 = 10,2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30,000 X 15인 X 12월 = 5,400 - 부양가족 20,000 X 20인 X 12월 = 4,800 ○ 자녀학비보조수당 = 9,175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학교(1급지 시지역) 47,700X6인X4회 = 1,145 - 중학교(2급지 읍면지역) 47,300X6인X4회 = 1,136 - 고등학교(가등급1급지시지역) 385,600X2인X4회 = 3,085 - 고등학교(가등급2급지읍면) 317,400X3인X4회 = 3,809 ○ 장기근속수당 = 12,72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5년이상 130,000 X 1인 X 12월 = 1,56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- 20년이상~25년미만 110,000 X 3인 X 12월 = 3,960 - 15년이상~20년미만 80,000 X 2인 X 12월 = 1,920 - 10년이상~15년미만 60,000 X 4인 X 12월 = 2,880 - 5년이상~10년미만 50,000 X 4인 X 12월 = 2,400 ○ 감독자수당 = 480 - 반장 20,000 X 1인 X 12월 = 240 - 조장 10,000 X 2인 X 12월 = 240
	2,215,520	1,958,340	257,180	09 일용인부임 ○ 본청, 사업소, 읍면 일용인부임 = 507,498 ○ 일용인부임 = 304,080 - 컴퓨터프로그램운영문화재관리 40,700X 2인X270일 = 21,978 - 군수, 부군수, 의회부속실 40,700X 3인X270일 = 32,967 - 보일러관리 36,400X 2인X270일 = 19,656 - 옹셋인쇄공 37,680X 1인X270일 = 10,174 - 조리사 31,240X 1인X270일 = 8,435 - 실과소단순사무보조인부 31,240X25인X270일 = 210,870 ○ 가산금 = 11,419 - 보일러관리 36,400X 2인X10%X270일 = 1,966 - 옹셋인쇄공 37,680 X 1인 X 10%X270일 = 1,018 - 실과소단순사무보조인부 31,240 X10인 X 10%X270일 = 8,435 ○ 기말수당 317,180,000 X 4/12 = 105,727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○ 시간외근무수당 = 27,706
						- 컴퓨터프로그램운영문화재관리 5,560 X 2인X15시간X12월 = 2,002
						- 군수,부군수,의회 부속실 5,560 X 3인X15시간X12월 = 3,003
						- 보일러관리 4,970 X 2인X15시간X12월 = 1,790
						- 읍셋인쇄공 5,150 X 1인X15시간X12월 = 927
						- 조리사 4,270 X 1인X15시간X12월 = 769
						- 실과소 단순사무보조인부 4,270 X25인X15시간X12월 = 19,215
						○ 주휴유급휴가수당 = 58,566
						- 컴퓨터프로그램운영문화재관리 40,700 X 2인 X 52주 = 4,233
						- 군수,부군수,의회 부속실 40,700 X 3인 X 52주 = 6,350
						- 보일러관리 36,400 X 2인 X 52주 = 3,786
						- 읍셋인쇄공 37,680 X 1인 X 52주 = 1,960
						- 조리사 31,240 X 1인 X 52주 = 1,625
						- 실과소 단순사무보조인부 31,240 X 25인 X 52주 = 40,612
						○ 년차급휴가수당 = 22,618
						○ = 22,618
						- 컴퓨터프로그램운영문화재관리 40,700 X 2인 X 18일 = 1,466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- 군수, 부군수, 의회부속실
						40,700 X 3인 X 18일 = 2,198
						- 보일러관리
						36,400 X 2인 X 18일 = 1,311
						- 읍셋인쇄공
						37,680 X 1인 X 18일 = 679
						- 조리사
						31,240 X 1인 X 18일 = 563
						- 실과소단순사무보조인부
						31,240 X 25인 X 21일 = 16,401
						○ 휴일근무수당 = 2,250
						○ 왕인유적지 매표소
						46,860 X 2인 X 2일X12월 = 2,250
						○ 수로원인건비 = 202,522
						○ 급여
						870,000 X 8인 X 12월 = 83,520
						○ 상여금
						870,000 X 8인 X 50%X 8회 = 27,840
						○ 정근수당
						870,000 X 8인 X 50%X 2회 = 6,960
						○ 명절휴가비
						870,000 X 8인 X 75%X 2회 = 10,440
						○ 직급보조비
						80,000 X 8인 X 12월 = 7,680
						○ 급식비
						80,000 X 8인 X 12월 = 7,680
						○ 교통비
						100,000 X 8인 X 12월 = 9,600
						○ 위험수당
						20,000 X 8인 X 12월 = 1,920
						○ 가족수당 = 7,680
						- 배우자
						30,000 X 8인 X 12월 = 2,880
						- 부양자
						20,000 X 20인 X 12월 = 4,800
						○ 연가보상비
						870,000 X 1/24 X 8인X17일 = 4,930
						○ 휴일근무수당
						30,000 X 8인 X 10일X12일 = 28,800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○ 시간외수당 4,750 X12시간X8인X12월 = 5,472
						○ 왕인유적지및읍면환경미화요원 = 1,480,632
						○ 급여 714,000 X 36인 X 12월 = 308,448
						○ 근속가산금 23,800 X 17일X36인X12월 = 174,788
						○ 상여금 = 141,696
						- 기말수당 984,000 X 36인 X 50%X4회 = 70,848
						- 정근수당 984,000 X 36인 X100%X2회 = 70,848
						○ 체력단련비 984,000 X 36인 X 50%X5회 = 88,560
						○ 정액수당 = 108,000
						- 특수업무수당 90,000 X 36인 X 12월 = 38,880
						- 작업장려수당 70,000 X 36인 X 12월 = 30,240
						- 가족수당 = 38,880
						· 배우자 30,000 X 36인 X 12월 = 12,960
						· 부양가족 20,000 X 108인 X 12월 = 25,920
						○ 복리후생비 = 221,616
						- 정액급식비 90,000 X 36인 X 12월 = 38,880
						- 가계보조비 110,000 X 36인 X 12월 = 47,520
						- 교통보조비 120,000 X 36인 X 12월 = 51,840
						- 급량비(조식대) 70,000 X 36인 X 12월 = 30,240
						- 명절휴가비 984,000 X 75% X 36인X2회 = 53,136
						○ 초과근무수당 = 400,248
						- 시간외근무수당 13,000 X 30일X36인X12월 = 168,48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- 휴일근무수당 52,200 X 40일 X 36인 = 75,168 - 야간근무수당 17,400 X 200일 X 36인 = 125,280 - 년차유급휴가수당 34,800 X 36인 X 25일 = 31,320 ○ 자녀학비보조수당 = 37,276 - 중학교(1급지 시지역) 47,700 X 6인 X 4회 = 1,145 - 중학교(2급지 읍면지역) 47,300 X 15인 X 4회 = 2,838 - 고등학교(가등급 1급지 시지역) 385,600 X 15인 X 4회 = 23,136 - 고등학교(가등급 2급지 읍면) 317,400 X 8인 X 4회 = 10,157
120 경상적경비	2,695,125	2,571,458	123,667	
201 일반운영비	180,166	153,854	26,312	
	180,166	153,854	26,312	01 일반운영비 ○ [일반수용비] ○ 2007년 추경예산서 인쇄 50,000 X 150부 X 3회 = 22,500 ○ 2008년 본예산서 인쇄 110,000 X 150부 = 16,500 ○ 2007년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인쇄 40,000 X 50부 X 3회 = 6,000 ○ 2008년도 예산편성메뉴얼인쇄 45,000 X 150부 = 6,750 ○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30,000 X 100부 = 3,000 ○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토너 339,000 X 1대 X 5회 = 1,695

과	목	예산액	전 년 예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○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및 토너 319,000 X 1대 X 7회 = 2,233
					○ 지방재정운영 참고도서 구입 20,000 X 20권 X 3종 = 1,200
					○ 예산 회계 관계 법령집 추록 30,000 X 12회 = 360
					○ 기관공통운영 일반 수용비 20,000,000 X 1회 = 20,000
					○ 홍보용 영암도기 구입 300,000 X 3 X 12월 = 10,800
					○ [위탁 교육비]
					○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426,000 X 98인 X 1회 = 41,748
					○ [공공요금 및 제세]
					○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300,000 X 12월 = 3,600
					○ [급량비]
					○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5,000 X 5인 X 144일 = 3,600
					○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 특근매식비 5,000 X 5인 X 80일 = 2,000
					○ 기관공통운영 급량비 5,000 X 100인 X 10일 = 5,000
					○ [운영수당]
					○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70,000 X 158인 X 3회 = 33,180
	202 여비	460,520	449,434	11,086	
		383,920	312,490	71,430	01 국내여비
					○ 지방교육 = 140,230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○ 지방교육(22개과정) = 140,230
					- 신규실무과정(일반직) 900,000 X 22인 = 19,800
					- 신규실무과정(기능직) 900,000 X 12인 = 10,800
					- 행정실무중견과정 750,000 X 7인 = 5,250
					- 행정실무초급과정 750,000 X 7인 = 5,250
					- 예산회계과정 750,000 X 8인 = 6,000
					- 세정실무과정 750,000 X 5인 = 3,750
					- 사회복지과정 750,000 X 10인 = 7,500
					- 토목실무과정 750,000 X 5인 = 3,750
					- 건축실무과정 750,000 X 5인 = 3,750
					- 농업실무과정 750,000 X 5인 = 3,750
					- 보건실무과정 750,000 X 6인 = 4,500
					- 환경실무과정 750,000 X 4인 = 3,000
					- 토지실무과정 750,000 X 3인 = 2,250
					- 실무능력향상과정 750,000 X 3인 = 2,250
					- 노인복지과정 370,000 X 3인 = 1,110
					- 기획홍보기법과정 370,000 X 16인 = 5,920
					- 전산관련 10개 전문교육과정 370,000 X 45인 = 16,650
					- 지역혁신 외 22개 전문과정 370,000 X 45인 = 16,650
					- 영어실용회화과정 1,800,000 X 2인 = 3,600
					- 일어실용회화과정 1,800,000 X 2인 = 3,600
					- 장기교육 중견간부양성과정 11,100,000 X 1인 = 11,100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	
						○ 중앙교육	= 84,410
						○ 중앙교육(40개 과정)	= 84,410
						- 재난재해방재 예방 과정	390,000 X 4인 = 1,560
						- 민방위실무과정	390,000 X 5인 = 1,950
						- 민방위 중견자 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자연재해실무자 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유도선 업무실무 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안전정책전문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시설물 안전점검실무 과정	390,000 X 4인 = 1,560
						- 건축행정실무교육과정	390,000 X 2인 = 780
						- 공공보건 관련 15개 과정	390,000 X 19인 = 7,410
						- 전염병 관리 실무과정	390,000 X 12인 = 4,680
						- 결핵관리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한방공공보건사업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환경특별 사법경찰과정	390,000 X 6인 = 2,340
						- GIS기초과정	390,000 X 4인 = 1,560
						- 환경갈등 관리 외 5개과정	390,000 X 7인 = 2,730
						- 물환경실무외 3개과정	390,000 X 6인 = 2,340
						-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과정	390,000 X 5인 = 1,950
						- 수목보호 기술과정	390,000 X 2인 = 780
						- 조경수 재배 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						- 숲가꾸기 담당자 과정	390,000 X 3인 = 1,170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-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과정 390,000 X 10인 = 3,900
					- 사회복지업무 실무과정 390,000 X 5인 = 1,950
					- 식품관리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양성평등시책 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복식부기 전문과정 820,000 X 8인 = 6,560
					- 토양검정 과정 820,000 X 2인 = 1,640
					- 인삼약초 과정 820,000 X 2인 = 1,640
					- 원예치료과정 820,000 X 2인 = 1,640
					- 친환경농업 외 7개 과정 390,000 X 11인 = 4,290
					- 공시지가 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지적관리자 과정 390,000 X 4인 = 1,560
					- 측량실무자 과정 390,000 X 4인 = 1,560
					- 여성리더쉽혁신과정 390,000 X 4인 = 1,560
					- 갈등관리 외 8개 과정 390,000 X 28인 = 10,920
					- 자원봉사지원 과정 390,000 X 4인 = 1,560
					- 잠재능력개발과정 390,000 X 3인 = 1,170
					- 도시경관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도시계획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도로포장 신공법 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- 보상평가실무과정 390,000 X 2인 = 780
					○ 지역현안사업 관리 중앙부처방문 228,000 X 8인 X 12회 = 21,888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자매결연단체 농특산물 판촉행사 228,000 X 12인 X 8회 = 21,888
				○ 자매결연단체 각종 행사참석 228,000 X 14인 X 12회 = 38,304
				○ 도 합동집무 및 단기연수교육등 250,000 X 60인 X 2회 = 30,000
				○ 각종 정책포럼참석 250,000 X 88인 = 22,000
				○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280,000 X 90인 = 25,200
	76,600	136,944	△60,344	03 국외여비
				○ 외국어 교육생 해외연수 3,200,000 X 4 = 12,800
				○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4,500,000 X 1인 = 4,500
				○ 각종시책추진 담당공무원해외연수 3,300,000 X 10인 = 33,000
				○ 업무추진 유공공무원해외연수 3,300,000 X 5인 = 16,500
				○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 2,450,000 X 4인 = 9,800
203 업무추진비	64,680	64,440	240	
			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				○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업무추진비 1,000,000 X 12월 = 12,000
			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
				○ 정원15인이하실과(기획예산실, 도시개발) 250,000 X 2실과 X 12월 = 6,00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정원30인이하실과(총무,재무,자치지원,문화관광,사회복지,환경녹지,친환경농업,지역경제,건설,재난관리) $350,000 \times 11\text{실과} \times 12\text{월} = 46,200$ ○ 정원 31인이상 실과(재무과, 종합민원처리과) $5,000 \times 8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480$
204 직무수행경비	1,504,140	1,426,260	77,880	
	77,400	70,200	7,200	01 직책급업무추진비 ○ 직책급업무추진비(월정액) = 77,400 ○ 군수 $65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7,800$ ○ 부군수 $40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4,800$ ○ 4급 $35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4,200$ ○ 5급, 지도관 $100,000 \times 22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26,400$ ○ 농업기술센터소장 $40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4,800$ ○ 보건소장, 읍면장 $150,000 \times 12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21,600$ ○ 6급사업소장,읍출장소장 $50,000 \times 2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1,200$ ○ 부 읍,면장 $50,000 \times 11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6,600$
	1,109,460	1,054,980	54,480	02 직급보조비 ○ 직급보조비(월정액) = 1,109,460 ○ 군수 $50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6,000$ ○ 부군수 $450,000 \times 1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5,400$ ○ 4급, 농업기술센터소장 $400,000 \times 3\text{인} \times 12\text{월} = 14,400$

과	목	예산액	전 예 산 액	년 도 액	증 △ 감	산 출 기 초
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급, 농촌지도관 250,000 X 34인 X 12월 = 102,000 ○ 6급 155,000 X 138인 X 12월 = 256,680 ○ 7급 140,000 X 185인 X 12월 = 310,800 ○ 8~9급 105,000 X 157인 X 12월 = 197,820 ○ 지도사 155,000 X 28인 X12월 = 52,080 ○ 기능직 = 136,08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급 155,000 X 3인 X 12월 = 5,580 - 7급 140,000 X 11인 X 12월 = 18,480 - 8~9급 105,000 X 50인 X 12월 = 63,000 - 10급 95,000 X 43인 X 12월 = 49,020 ○ 연구사 155,000 X 5인 X 12월 = 9,300 ○ 청원경찰(본청, 사업소) 105,000 X 15인 X 12월 = 18,900
		317,280	301,080	16,200	03	특정업무수행활동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업무수행활동비 = 317,28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담당공무원 150,000 X 6인 X 12월 = 10,800 ○ 세무담당공무원 100,000 X 42인 X 12월 = 50,400 ○ 관재담당공무원 50,000 X 4인 X 12월 = 2,400 ○ 감사담당공무원 60,000 X 3인 X 12월 = 2,160 ○ 법무의회담당공무원 50,000 X 2인 X 12월 = 1,200 ○ 여론동향담당공무원 80,000 X 2인 X 12월 = 1,920 ○ 복식부기담당공무원 100,000 X 3인 X 12월 = 3,600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청및사업소직원대민활동비 50,000 X 381인 X 12월 = 228,600 ○ 본청및사업소청경대민활동비 50,000 X 15인 X 12월 = 9,000 ○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수당 300,000 X 1인 X 12월 = 3,600 ○ 행정자치부 파견근무자 수당 300,000 X 1인 X 12월 = 3,600
301 일반보상금	62,100	62,500	△400	
	39,600	40,000	△400	07 민간인국외여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정시책추진민간인해외여비 3,300,000 X 12인 = 39,600
	22,500	22,500	0	10 행사실비보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인 교육여비등 실비보상 100,000 X 10인 X 10회 = 10,000 ○ 문화,체육행사,세미나,공청회등 출연자사례금 100,000 X 5인 X 10회 = 5,000 ○ 산업시찰,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보상 50,000 X 20인 X 5회 = 5,000 ○ 국가단위행사 민간인참석여비 50,000 X 10인 X 5회 = 2,500
307 민간이전	423,519	414,970	8,549	
	408,519	399,970	8,549	03 사회단체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단체보조지원금 $340,000,000 + (35 \times 171,449,665,000 / 100,000) + (15 \times 565,890) + (36 \times 62,242 / 100) = 408,519$
	15,000	15,000	0	04 민간행사보조·위탁

과목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증△감	산출기초
				○ 도·중앙단위 행사참여 지원 5,000,000 X 3회 = 15,000
200 사업예산	1,202,500	1,001,400	201,100	
220 자체사업	1,202,500	1,001,400	201,100	
401 시설비및부대비	1,000,000	1,000,000	0	
	1,000,000	1,000,000	0	01 시설비 ○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20,000,000 X 50개소 = 1,000,000
402 민간자본이전	200,000	0	200,000	
	200,000	0	200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10,000,000 X 20개소 = 200,000
405 자산취득비	2,500	0	2,500	
	2,500	0	2,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 칼라레이저프린트기 2,500,000 X 1대 = 2,500